

부록 2-나-4

부속서 2-나의 목적상 다음의 정의¹가 적용된다.

전기기기의 안전이란 기기가 안전 문제에서 모범 엔지니어링 관행에 따라 구축되어, 만들어진 용도로 적절히 설치되고 유지되어 사용되는 경우, 인간, 가축 또는 재산의 안전을 위협하게 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말한다.

전자파적합성이란 전자파 환경에서 어떤 것에도 허용치를 넘는 전자파적 장애를 유발함이 없이 그 환경에서 만족스럽게 기능하는 기기 또는 시스템의 능력을 말한다.

적합성 선언이란 검토 후 결정에 근거하여, 특정 요건의 충족이 증명되었다는 진술서를 발급하는 것을 말한다.

표준이란 제품 또는 관련 공정 및 생산 방법에 대한 규칙, 지침 또는 특성을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하여 규정한 것으로서, 인정된 기관에 의해 승인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이지 아니한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기술규정이란 적용 가능한 행정 규정을 포함하여, 제품의 특성 또는 관련된 공정 및 생산 방법을 규정하고 그 준수가 강제적인 문서를 말한다. 이는 또한 제품, 공정 또는 생산 방법에 적용되는 용어, 기호, 포장, 표시 또는 라벨링 요건을 포함하거나 전적으로 이들만을 다룰 수 있다.

공급자란 제조자, 또는 수입 당사국의 영역에서 그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대리인을 말한다. 수입 당사국의 영역 내에 제조자 및 대리인이 모두 없는 경우, 공급자 선언을 제시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적합성 평가란 제품, 공정, 시스템, 인 또는 기관과 관련된 특정 요건이 충족되었음을 증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적합성 평가는 제1자, 제2자 또는 제3자 활동으로 수행될 수 있

¹ ISO/IEC 17000:2004 및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에 관한 협정에 근거함.

고 시험, 검사 및 인증과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그리고

시험소란 시험 서비스를 수행하고 이러한 특정 임무를 수행할 자격이 있다는 공식 증명을 알리는 증명서를 받은 적합성 평가기관을 말한다.